

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3. 10.

발 의 자 : 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(2022.1.13.시행)으로 우리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 변경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9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7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규정된 “장애등급”을 “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40조에 규정된 “장해등급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43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41조”로 한다.

제4조(「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</u>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제1항 제2호의 “장애”라 함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규정된 “장애등급”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</u> 제37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 ----- --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40조에 규정된 “장애등급”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2.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36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같은 법 시행령 제33조</u>----- -----</p>

<p>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-	---

3.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와 <u>같은 법 시행령 제43조</u>에 따라 남양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같은 법 시행령 제41조</u>----- ----- -----.</p>

4.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(이하 “증인등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.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김학철